

일부개정**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8
------------	-----

제출년월일: 2002. 1.
제 출 자: 광진구청장

1. 개정이유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의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인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전자문서 확대 및 무인 민원자동발급기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구청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갖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나. 공인 인영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하며, 전자문서용의 경우에는 색상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 다.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규정을 신설하여, 안전 및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사무관리규정 개정(2001.8.25), 시행규칙 개정(2001.2.14)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 : 입법예고기간(2001.11.26~12.16)중 접수의견 없음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동장의 공인 및 동사무소 전용 구청장의 공인은 모두 동장이 관수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특수공인) 구청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규격) 공인의 모형은 구청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인 인영의 색상) 공인 인영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날인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교부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중 “공인”을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인영으로 본다.

[별표 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센티미터)

구 분		한변의 길이
직인	○ 구청장	3.0
	○ 보건소장	2.4
	○ 동장	2.1
청인	○ 합의체기관, 자문기관 등	3.6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비고 :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번의 최대길이,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공인명			
종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 사용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등록(재등록) 사유	
		관리부서	
		비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 사용일 : 년 월 일	
		폐기사유	
		폐기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고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날인하고, 그 날인된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또는 210mm×297mm 한지)

〈신·구조문 대비 표〉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③ (생략) ④ <u>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관수한다</u>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동장의 공인 및 동사무소 전용 구청장의 공인은 모두 동장이 관수한다.</u>
<u><신 설></u>	제3조의2(특수공인) 구청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규격) 공인의 모형은 구청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있다.
<u><신 설></u>	제6조의2(공인 인영의 색상) 공인 인영의 색상은 뿐만 아니라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보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상을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7조(날인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 다만, 등·종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공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교부기관에 등록(제등록을 포함한다)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u>
제11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1조(공고) <u>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제외한다)을</u> 1. ~ 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조례 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단위:센티미터)		[별표1] (단위:센티미터)		
구분	한변의 길이	구분	한변의 길이	
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장 2.4 ○ 동장 2.1 ○ 사업소장 -4급, 5급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소 2.1 -6급 공무원인 사업소 1.8 	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청 장 3.0 ○ 보건소장 2.4 ○ 동 장 2.1 	
청인	○ 학의제기관, 자문기관 등 3.6	청인	○ 학의제기관, 자문기관 등 3.6	
		<p>비고 :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변의 최대길이,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p>		
〈신·설〉		〈별지 제2호의 2서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p>공인명</p> <input type="checkbox"/>				
<p>종 류</p>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등 록 제 등 록	전자이미지 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 사용일 :	년 월 일
	전자 이미지 공인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인영	등록(제등록) 사 유		
		관리부서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 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 사용일 :	년 월 일
		폐기시유		
		폐기자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p>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날인하고, 그 날인된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p>				